



#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Ⅱ(육계관련)

## 축산물 안전성 검사 및 경영안정

### ① 가축질병근절사업

#### 1. 사업개요

##### 1. 목적

- 구제역·돼지콜레라·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
- 도축장 출하소의 SRM 제거 및 정밀검사 강화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
-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평가·포상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가축방역대책 및 소부부세라 근절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적극성 유도

##### 2.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5조제1항 및 제3항·제17조·제20조·제22조제2항 및 제3항·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약·소독·역학조사·살처분의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소독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일제소독을 지원함으로써 공동방역에 기여
  -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사육 통계에 따라 소·사슴·염소(10두 미만), 돼지(500두 미

만), 닭(3,000수 미만), 오리 전농가에 대한 일제소독 지원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 시기	측정방법
		2005	2006	2007		
○ 소독지원 대상농가수(천호)	256	262	260	258	2009.1	시·도별 지원실적 합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계	22,366	22,335	22,212	21,277	20,166
보조	15,243	15,285	15,162	12,001	11,190
지방비	6,923	6,950	6,950	9,176	8,976
자부담	200	100	100	100	-
○ 가축질병근절사업	22,366	22,335	22,212	21,177	20,066
- 보조	15,243	15,285	15,162	11,901	11,090
- 지방비	6,923	6,950	6,950	9,176	8,976
- 자부담	200	100	100	100	-
○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	-	-	100	100
- 보조	-	-	-	100	100

II.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방역본부 기자재 및 긴급방역지원단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나)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소독약품비·운영비) : 지방자치단체

다) 가축방역포상

- 가축방역·부루세라 포상 : 지방자치단체, 한우협회지부  
- 지방자치단체는 공통으로 대상이 되고 한우협회는 부루세라 포상만 해당
- 신고포상금 : 일반인

라) SRM제거시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도축업의 영업자

마)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 축산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방역본부 기자재 및 긴급방역지원단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나)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소독약품비·운영비) : 시·도

다) 가축방역포상

- 가축방역 포상 : 9개도, 가축위생시험소(44개소), 시·군
- 부루세라 포상 : 시·군, 한우협회지부
- 신고포상금 : 일반인(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의 전염병 발

생신고자는 제외)

라) SRM제거시설

- 1일 소 도축두수(실 도축일수기준) 30두 이상 도축장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의 살처분 또는 이동제한 명령으로 인해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이동제한으로 가축을 입식하지 못하여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

3. 지원대상

가) 방역본부 기자재 및 긴급방역지원단

- 방역본부 방역요원의 현장 방역활동 수행을 위한 방역복, 주사기, 소 귀표 구입비 등
-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시 초기 대응할 방역본부의 긴급방역지원단(방역요원 20명) 구성 및 교육·훈련비

나)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

- 매주 수요일 운영하는 전국일제소독의 날 52회 중 20회에 대해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직접 소독 지원

다) 가축방역포상

- 가축방역사업 및 부루세라 방역사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및 한우협회지부에 대한 포상금 지급
- 가축전염병 발생, 가축방역규정 위반자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라) SRM제거시설

- 도축장에 SRM제거를 위해 필요한 시설지원 : 척수흡입기, SRM회수용기, 척주골발시설, 머리골발시설, SRM보관시설, 광우병검사 시료채취 시설 등

마)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 가축 살처분·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방역본부 기자재 및 긴급방역지원단

- 방역본부 방역요원의 현장 방역활동 수행을 위한 방역복, 주사기, 소 귀표 등 소모품 구입에 사용
- 방역본부의 긴급방역지원단(방역요원 20명) 구성 및 교육·훈련비

나)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

- 전국일제소독의 날(매주 수요일) 운영에 소요되는 소독약품비 및 공동방제단(3,878개) 운영비(연 20회)

다) 가축방역포상

- 가축방역사업 및 부루세라 방역사업 우수 지자체 등에 대한 포상금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라) SRM제거시설

## + 정책 II

○ 도축장에 SRM 제거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지원

### 마)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 가축 살처분·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소득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의 최대 6개월간의 생계비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가) 방역본부 기자재 및 긴급방역지원단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촉발기금 보조 100%

#### ○ 사업의무량

- 가축전염병 검사시료 채취물량 : 가축전염병예방방법령에 따라 방역본부에 위탁한 구제역·소부루세라·돼지콜레라·돼지오제스키병·닭뉴캐슬병 등 5종의 가축전염병 검사시료 채취(시료채취 세부물량은 추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을 별도 시달할 계획)
- 긴급방역지원단 : 방역요원 20명으로 구성된 지원단 편성

### 나)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

○ 소독약품비 및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대해 촉발기금 50%, 지방비 50%

○ 공동방제단 편성기준 : 3,878개반

- 반별 2~3개팀(팀장 2~3명)으로 구성
- 1개반별 80~100호를 소독하고 1개팀별 20~30호 소독 실시
- 동일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를 1개반으로 구성, 다른 축종의 농가를 소독  
예) 양돈농가로 공동방제단을 구성한 경우 한우 또는 양계농가를 소독

### 다) 가축방역포상

○ 포상대상 지자체, 한우협회지부 및 개인 등에 촉발기금 100% 지급

### 라) SRM제거시설

○ 지원조건 : 촉발기금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사업량 : 1개소 지원(2008년)

### 마)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 촉발기금 50%, 지방비 50%

○ 지원대상 축산농가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의 생계비 지원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가) 방역본부 기자재 및 긴급방역지원단

○ 방역본부 현장 방역요원의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방역복, 주사기, 보정기, 보호장구 및 개인용 소독기 등 소요물품 구매비 정액 지원

○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시 긴급 대응할

방역본부의 긴급방역지원단의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정액 지원

### 나)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

○ 소독약품비 및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급기준

- 소독약품비 : 1농가 1회 소독시 희석액 30ℓ
- 공동방제단 운영비 : 성과급(1농가 1회 소독시 2.5천원) 또는 정액제(1개팀 75천원)

※ 시장·군수는 예산 범위내에서 공동방제단 편성·운영방식 조정 가능

### 다) 가축방역포상

○ 가축방역 포상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최우수		우수		장려	
	개소수	포상금액	개소수	포상단가	개소수	포상단가	개소수	포상단가
광역시	3	22	1	10	1	7	1	5
도	5	34	1	10	2	7	2	5
시험소	6	39	1	10	2	7	3	5
시·군	25	186	9	10	8	7	8	5
계	39	281	12	-	13	-	14	-

○ 신고포상금(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금액 및 기준)

지급대상	신고포상금	확인방법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임상 의심축을 신고한 자	100만원	검역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50만원	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원장이 정밀검사 실시(정밀검사 결과 : 음성)
돼지콜레라 발생을 신고한 자	50만원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소해면상뇌증 임상 의심축을 신고한 자	100만원	검역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30만원	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원장이 정밀검사 실시(정밀검사 결과 : 음성)
돼지콜레라 또는 뉴캐슬병 예방접종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부루세라병 검사 또는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의 소독관련규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2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2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부과

### 라) SRM제거시설

○ 도축장 당 10억원(촉발기금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마)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 생계안정비용은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상한액으로 정함(2006년 AI 발생시 상한액을 1,300만원으로 설정)

■ 담당과 : (02)500-1942 농림부 가축방역과

② 축산물검사 사업

한 숫자 제시)

I. 사업개요

1. 목적

- 축산물(식육·우유 등)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검사 강화로 소비자 신뢰 및 국민보건 증진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및 제40조(보조금)
  -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의 식육의 경우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 ⑤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식육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40조(보조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축산물위생검사기관 또는 위생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수거에 소요되는 경비
  2.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의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중장기적 목표 또는 사업을 통해 이루려는 성과를 숫자적으로 표현)
  - ("00년까지 0000를 00개소 육성하여 XXX를 xx까지 확대" 형태로 표현)
  - (1. 목적에서 거론된 지향점을 표현하면서 측정가능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05	2006	2007		
○ 잔류물질 검사중 규제 검사 비율(%)	16.3	9.6	11.9	13.5	2009. 2	(규제검사수/잔류물질검사수)×100
○ 항생제 내성균 검사건수(건수)	2,700	-	-	-	2009. 2	검사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계	75,847	5,714	6,199	6,217	35,800
보조	40,449	3,304	3,569	3,685	21,300
융자	-	-	-	-	-
지방비	35,398	2,410	2,630	2,532	14,500
차부담	-	-	-	-	-

II.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시·도 축산위생연구소 등)에 축산물안전성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재료비, 검사보조원 인건비 등 예산 지원

2. 지원대상

- 도축검사 수행을 위한 검인용 색소 지원, 식육 중 잔류물질·미생물검사, 원유검사, 수거검사, 식육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 젖소유방염검사, 항생제 내성균 검사 등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검사에 소요되는 검사장비 및 재료 등 소모품 구입, 검사보조원 인건비, 장비유지보수비, 유상수거비 등
- 축산물 검사장비 지원(26종 38점)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시·도 축산위생연구소 등)에 식육 중 잔류물질·미생물검사, 원유검사, 축산물가공품검사 등을 위한 검사장비 구입예산 지원
  - 검사장비 구입내역(별표 1)
    - HPLC 등 잔류물질 검사장비 8종 14점
    - 중금속분석기 등 가공품 검사장비 8종 10점
    - 체세포, 유성분분석기 등 원유 검사장비 2종 4점
    - 미생물동정기 등 미생물 검사장비 6종 8점
    - 원심분리기 등 기타 검사장비 2종 2점

## + 정책 II

- 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원유검사 400,980천원, 내성균검사 44,010천원)
  - 항생제 내성균 검사 보조원(9명) : 각 도별 1명(특별시·광역시 제외)
  - 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내역(별표 2, 별표 3)
- 검사장비 유지·보수비(335,160천원)
  - 검사성적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후화된 검사장비 및 정밀검사 장비의 유지·보수비 지원
  -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지원내역(별표 4)
- 축산물 유상수거비 지원(195,000천원)
  - 축산물 수거시 무상수거 제도에 대한 업체 부담경감을 위해 유상수거비 지원
  - 축산물 유상수거비 지원내역(별표 5)
- 검사재료비 지원(1,153,133천원)
  - 도축검사 수행을 위한 도축검인용 색소 구입비 지원
  - 식육 중 미생물검사
    - 검사대상 :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살모넬라균 등
    - 사업량 : 120천건
    - 검사내용 :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농림부고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 검사대상 : 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
    - 사업량 : 약 120천건(소·돼지·닭·오리·양(염소 포함))
    - 검사내용 :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농림부고시)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 신속간이검사키트 적용시 우선 구입·사용
  - 원유검사 공영화를 위한 검사재료비 지원
  -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축산물 수거검사
    - 검사대상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 사업량 : 7,500건
    - 검사내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2008년도 축산물위생감시지침”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
    - 검사대상 : 닭, 오리, 메추리의 알
    - 사업량 : 3,730건
    - 검사내용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농림부고시)”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젓소 유방염 검사
- 항생제 내성균 검사
  - 검사대상 : 소, 돼지, 닭의 도체, 분변, 임상시료
  - 사업량 : 2,700건
  - 검사내용 : 검사대상 가검물에 대해 검사대상 균종에 대한 항생제 내성여부 검사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검사재료비 세부지원내역(별표 6)

###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본사업의 지원되는 자금의 재원, 지원기준, 개인별 지원규모를 제시
- 자금을 지원받는 개인·단체가 해야 할 의무 및 의무량 등을 기재
- 국고 보조·융자(금리), 지방비 보조·융자, 자부담율 및 자부담 조건 등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검사장비,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 정률지원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검사재료비 : 국고보조 100%
  - 국고보조가 부족한 경우 지방비 추가 확보

■ 담당과 : (02)500-1923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 ③ 축산종합지도지원(HACCP지도지원)

### I. 사업개요

#### 1. 목적

- 축산물 HACCP 적용확대에 따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 등에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보조금)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가공·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2005	2006	2007		
○ 참여농가(업체)수	140	-	45	80	2009.1	컨설팅 참여농가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계	-	450	800	1,400	70,000
보조	-	225	400	700	35,000
응차	-	-	-	-	-
지방비	-	-	-	280	14,000
자부담	-	225	400	420	21,000

II.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사육농가(소, 돼지, 닭)와 축산물작업장(식육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중 HACCP 적용희망 농업인·영업자
  - 타 농림사업(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에서 HACCP 지정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에 선정된 농업인·영업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자격
  - 닭사육농가 : 축산업(닭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000수 이상인 농가
  - 식육판매업소 : 영업장의 면적이 33.0㎡ 이상인 업소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집유업
  - 사업대상 우선순위 부여 : 사육농가의 경우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 사육규모가 보다 큰 농가, 영업장의 면적 또는 규모가 보다 넓거

나 큰 영업을 우선 순위로 대상자 선정

- 시·도는 사업대상자수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 시·도는 사업대상자(사육농가) 선정시 인근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중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HACCP 컨설팅 비용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아래 내용을 포함한 HACCP 컨설팅 실시
  -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 사육농가의 경우 우수농장관리제도(GAP)와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 영업장(판매, 보관, 운반, 집유)의 경우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운용 지원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감시관리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 개소당 10백만원(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 완료시점은 HACCP 지정 신청 시까지임.

■ 담당과 : (02)500-1923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④ 가축방역사업

I. 사업개요

1. 목적

- 가축전염병의 발생·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
- 구제역 재발방지, 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 및 돼지열병·돼지오제스키병, 닭뉴캐슬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조기 근절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 브루셀라병, 결핵병 및 광견병 등 인수(人獸)공통 전염병의 전파 방지

2.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부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5조제1항 및 제3항·제17조·제20조·제22조제2항 및 제3항·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약·소독·역학조사·살처분의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 ① 농림부장관은 수의사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 제3조(공익수의사의 신분) : ① 공익수의사는 농림부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 동법 제16조(보수 등) : ① 공익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가축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록·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한 가축
  3.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 청정화를 위하여 면역형성률 및 예방접종률을 각각 95%, 90% 수준으로 유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05	2006	2007		
○ 닭 뉴캐슬병 예방접종률	90%	88	88		2008.2월	- 검역원 집계실적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계	-	60,184	131,343	107,491	578,170
보조	-	51,590	122,090	93,057	506,000
지방비	-	8,594	9,253	14,434	72,170

구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 (경제)시도가축 방역	-	493	493	493	2,500
- 보조	-	493	493	493	2,500
○ 시도가축방역	-	29,691	30,850	36,998	225,670
- 보조	-	21,097	21,597	22,564	153,500
- 지방비	-	8,594	9,253	14,434	72,170
○ 살처분보상금	-	30,000	100,000	70,000	350,000
- 보조	-	30,000	100,000	70,000	350,000

II.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시·도(시·군·구), 가축위생시험소 및 대한수의사회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1) 긴급방역비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 기타 질병 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필요시 예방약·진단키트 등 지원

(2) 수의사 연수교육 등

- 주관 및 교육인원 : 대한수의사회 / 2,700명(수의사 2,500, 담당공무원 200)
- 교육대상 : 공·개업 수의사 및 공익수의사 담당공무원
- 교육내용
  - 최신 대·소동물 질병 진단 및 치료기술 보급 등
  - 공익수의사 운영지침 및 관련법령 등 교육

(3) 공익수의사 교육 및 여비

- 공익수의사에 대한 직무교육 및 임관식 여비 지원

(4) 예방약

- 정부지원 예방약의 종류 : 17종
  - 닭 : 뉴캐슬병, 마이코플라즈마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부조달계약단가에 의거 사업계획물량을 구입한 후 관내 공수의사 등을 동원, 예방주사 실시
  - 지역 공동방역사업단이 구성된 시·군의 경우 축종별 해당 예방약품을 사업단에 우선 지원하여 사업단에서 실시

(5) 검진

- 정부지원 검진약품 : 6개종
  - 우결핵, 브루셀라(MRT), 브루셀라(Rose-Bengal), 돼지오제스키병, 추백리(평판), 추백리(ELISA)
- 가축방역기관 가축방역관이 사업계획에 의거 대상농가를 방문, 검진 실시

- 진단 등 검사결과에 대하여 해당농가 통보 등 조치

**(6) 기생충 구제**

**(7)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 가축전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접종 확인체계 구축을 위한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에 소요되는 진단액류 및 실 시재료비 지원
-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검진 업무 등 수행

**(8) 예방접종 시술비**

**(9)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10) 광우병 진단키트 지원**

**(11) 시험소 방역보조원 지원**

- 시·도 가축방역기관 본·지소(45개소)에 178명의 가축방역 보조원 임금
  - 기관별 사업규모 및 여건 등을 감안,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동 방역보조원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방역업무에 종사

**(12) BSE 검사실 유지·보수**

**(13) 시·도 가축방역기관 방역장비 지원**

-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 및 진단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방역차량 55대, 소독차량 11대, 검사장비 69종) 등 지원

**3. 지원대상**

- 긴급방역재료비 : 가축전염병 발생시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조치에 소요되는 소독약품·방역복 등 공급
- 수의사 연수교육 : 공·개업수의사에 대한 보수·연수 교육 비용 지원
- 공익수의사 교육 등 : 공익수의사 직무교육비 및 임관식 여비
- 살처분보상금 및 도태장려금 : 브루셀라병 등 발생시 보상금 지원
- 예방약품 등 지원 : 예방주사·검진·기생충구제, 혈청·병성감정, 부루세라 채혈보정비 및 광우병 진단키트 등 지원
- 방역장비 지원 : 시·도 가축방역기관 방역보조원 및 방역장비 등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긴급방역재료비, 예방주사, 검진 및 기생충구제 약품 구입비
-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사업비, 예방접종 시술비 및 소부루세라병 채혈비

- 시험소 방역장비 구입비 및 방역보조원 인건비
- 살처분보상금 및 도태장려금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 국비 보조 30~100%수준(세부사업별로 지원기준 상이)
  - 예방주사, 검진 및 기생충구제 등 약품비 : 국비 70%, 지방비 30%
  - 살처분보상금 : 국비 60%
  - 혈청검사사업 : 국비 100%
  -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예방접종 시술, 채혈·보정비 등 : 국비 30~50%, 지방비 50~70%
- 사업의무량 : 시·도별 예방주사, 검진 및 기생충 구제 등의 사업물량 배정
  - 예방주사, 검진 및 기생충구제 등 : 1,346백만두·수
  -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 1,480건, 소부루세라병 채혈·보정 : 900천두
  - 광우병 진단키트 : 6천두분, 시험소 방역요원 : 178명
  - 가축위생시험소 방역장비 등 : 3종, 135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예방주사, 검진 및 기생충 구제약품은 조달청 단가계약 금액 이내
- 예방접종 시술비는 두당 1천원, 소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는 두당 7천원
-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은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인금 지급
- 시험소 방역장비는 지자체에서 입찰 등을 통해 한도배정액 이내에서 구입
  - ※ 세부사업별 사업실시요령과 예방약 및 구제약품 단가는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 후 별도 시달 계획

■ 담당과 : (02)500-1940 농림부 가축방역과

**⑤ 축산공제사업**

**I. 사업개요**

**1. 목적**

- 자연재해(수해, 풍해 등) 및 화재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여 축산경영의 계획화와 양축가 소득 보장



## + 정책 II

-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축기반 조성
-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축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등으로 재해예방

###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①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공제대상 축종의 최고 80%까지 가축공제 가입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법
○ 가축공제가입률(%)	45.4	총 15개 축종의 가축 사육두수 중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공제에 가입한 가축 두수	2004) 24.1 2005) 33.3 2006) 40.6	2006년말 15개 축종의 총 가축사육두수 중 2007년 가입대상 축종의 가입두수(비율)
○ 주요축종 가입률(소)(돼지)(가금)(말)		공제대상 축종 사육두수 중 경영안정을 위해 공제에 가입한 가축 두수	7.1 57.4 33.4 4.6	2006년말 공제대상 축종 총 사육두수 중 공제에 가입한 가축 두수(비율)

※ 주요 축종 최근 3년 실적치는 2004년~2006년의 가입률 평균 숫자임.  
 ※ 2006 전업농비중(72.4%) : 한우 589천두(32.0%), 육우 107(6.0), 젖소 343(73.9), 돼지 7,503(80.0), 산란계 39,024(68.2), 육계 46,345(83.7)  
 ※ 전업농 : 한우·젖소 50두이상, 돼지 1천두이상, 닭 3만수이상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계	111,265	38,505	69,248	57,346	
보조	56,057	18,610	34,624	28,673	
자부담	55,208	19,895	34,624	28,673	

## II.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협중앙회(조합) 및 LIG·현대·동부·삼성 컨소시

엄(민영보험사)이 판매하는 가축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지원조건

- 납입공제료 : 축발기금보조 50%, 가입자 부담 50% 단, 축사 특약은 축발기금보조 30%, 가입자부담 70%

#### 나) 지원 제한사항

-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중 미등록 농가는 가축공제료 정부지원 제외
  - 가축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가입 신청시 축산업등록증 사본첨부 또는 청약서에 축산업등록 증명번호 기재
-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정부지원 가능. 다만,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 없이 공제료 정부지원 가능(건물의 적법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
  - ※ 소방방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는 가축공제 축사특약에 대한 정부 지원 제외

### 3. 지원대상

- 가축공제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시행자가 판매하는 가축공제 농업인 납입 공제료 보조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 보조 50%, 자부담 50%(단, 축사특약은 보조 30%, 자부담 7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내용 : 농가의 가입금액 선택에 따른 공제료 정부 보조
  - 공제요율 : 사업시행기관(농협, 민영보험컨소시엄)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 사업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

구분	가금	축사
가입대상	닭, 오리, 종계, 꿩, 메추리, 타조, 거위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포괄가입	포괄가입
지원비율	납입 공제료의 50%	납입 공제료의 30%

○ 축종별 보장내용(시가의 80%~100%까지 지급)

구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공제금 지급)	가입 대상
기금	○ 화재, 풍재, 수재, 설해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95%까지 보상	제한 없음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벼락으로 인한 전기장치의 고장에 따른 손해	○ 가입금액 한도로 시가의 95%까지 보상	
축사	○ 화재, 풍재, 수재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 세부 보장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담당과 : (02)500-1690 농림부 협동조합과

## 축산자조사업 지원

### I. 사업개요

#### 1. 목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 2. 근거법령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05	2006	2007		
○ 축산단체 거출률(%)	79	73.1	77.4		매년초	○ 거출계획 금액 대비 거출 금액 비율 ○ 익년 자조금 결산시 조사
○ 대상축종(개)	7	5	5		매년초	○ 대상축종의 자조금 거출 에 따른 사업여부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18,786	13,600	13,500	15,600	15,600
한우	1,491	4,000	5,000	5,000	5,000
낙농	8,124	2,100	2,100	4,200	4,200
양돈	8,190	4,800	5,000	5,000	5,000
양계	949	2,350	1,300	1,300	1,300
오리	-	250	50	50	50
양륙	32	100	50	50	50

※ 주) 보조기준이며, 2005년까지는 지원실적

### II.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 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 2. 자조금의 용도

- 축산물 소비홍보
-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밖에 자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3. 지원형태

- 거출금의 100%범위 이내에서 지원

#### 4. 거출금의 한도 및 지원조건

-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가 정하고, 임의자조금의 경우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
- 축산물(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쇠고기, 오리고기, 낙농 등) 소비 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내에서 보조지원

■ 담당과 : (02)500-1907 농림부 축산경영과

